

2013. 10. 12(토)

Round Table

지방분권의 현황과 정책과제

지방재정분권 실현

박기묵(대구대학교)

1. 지방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1) 지방재정확충의 필요성

- 중앙과 지방간 재정 불균형으로 인한 지방의 중앙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
 - 지방정부의 재정의존도가 높아진다면 자연적으로 지방정부는 중앙의 의존재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지방정부는 중앙으로부터 의존재원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은 곧 중앙의 지시를 받게 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할 것임, 지방정부의 고유한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음
 - 재정적 불균형은 재정의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중앙정부의 보조금사업 등이 늘어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업들에 대한 자기책임성을 가질 유인성이 떨어지게 될 것임
 - 자체세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이 큼: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에 의지하여 재정지출을 방만하기 운영할 위험성이 있음, 실제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의 국가들은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에 의지하여 재정지출을 방만하게 운영함으로써 지방분권이 실패되는 결과를 초래함
- 지방자치단체의 의존재원의 비중의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의존재원의 비중이 2005년 35.6%에서 2010년 41.2%로 증가하고 있음, 2005년부터 의존재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국고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 이로 인한 지방의 의무부담비율이 증가하여 지방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05년 사회복지사업의 대폭적인 지방지양이 의존재원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음, 2005년 지방예산의 12.8%에서 2012년 20.5%로 증가함, 지방으로 이양된 국고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분권교부세 제도를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하기로 함
 -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장애인복지사업 등으로 인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재원이 점차 증가됨, 우리나라는 2004년 지방분권특별

법을 제정함으로써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활동을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활동으로 변시키는데 초석을 놓게 됨, 이 법을 통해 노무현 정부는 균형발전을 국가의 기조로 삼으면서 중앙정부의 사업을 대폭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시작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의존재원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으면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부담과 재정지출을 연결시키지 않고, 주민들에게 재정부족으로 제반 문제들을 알리기보다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려는 경쟁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측면에서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다음의 <그림1>은 자체세입 비중과 의존재원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1>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입과 의존재원의 비중



- <그림1>에 대한 설명: 자체수입 비중은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의존재원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줌, 이대로 계속 이어진다면 2025년경에는 의존재원의 비중이 50%를 능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재정의 악화

- 민선자치의 시대를 들어서면서 당초 지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체계적인 재정 확보노력의 미비, 부풀려진 파급효과에 의한 방만한 재정지출, 미래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재정차입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은 지방의 총부채가 2002년 약 19조 900억에서 2012년 30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지방공기업 역시 그 부채가 2008년 약 47조 8,000억 원에서 약 69조 1,000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임

- 현재의 재정수요 측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사회복지분야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음, 2012년 지방예산 151조 원 중 사회복지비가 30조 9,000억 원으로 예산의 20.5%를 점하고 있음, 2005년까지만 해도 사회복지비중은 12.8%였으나 7년 만에 157%의 예산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음, 만약 이대로 증가율이 지속된다면 사회복지비 의무부담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 확실함, 각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비 부담이 가장 큰 단체는 특별광역시 29.7%, 도 31.3%, 시 31.3%, 군 28.2%, 자치구 60.1%로 나타남, 특히, 자치구는 60.1%로 지방자치단체들 중 사회복지비 지출수요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음
- 지방채무의 상환 시점 도래로 인한 지출 압력: 2009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급격히 증가함, 이는 2008년 세계경제위기 대응과정에 발생한 것으로 미래의 지출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그렇게 큰 압력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채무비율은 2011년 기준으로 17.9%, 일본(141.6%), 미국(143.2%), 영국(33.5%)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채무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관리하여야 할 것임

○ 재정구조의 질적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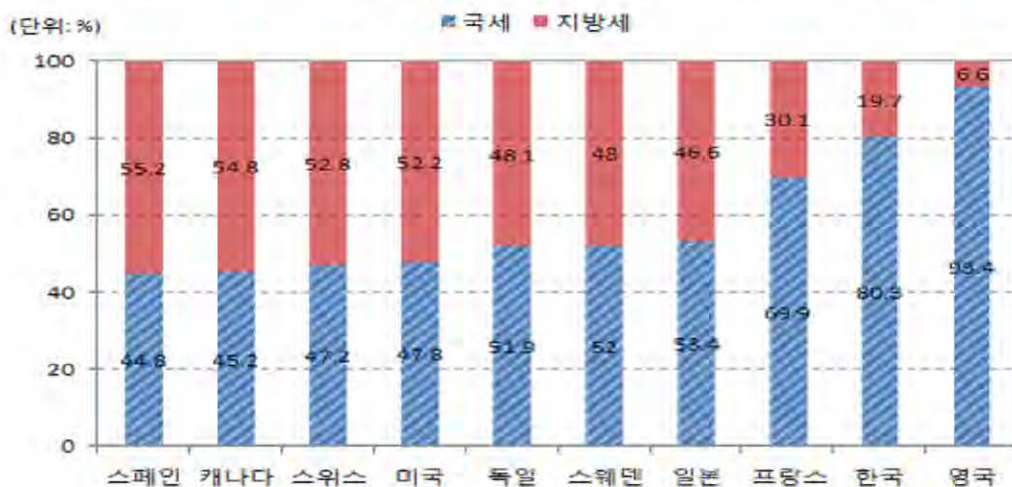
- 지방재정자립도가 감소하고 있음: 2005년 56.2%에서 2012년 52.3%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이는 구조적인 관점에서 지방재정이 건전하지 않은 재정구조라 할 수 있음
- 지방세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지방세의 비중은 2005년 22%에서 2012년 20.7%로 점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이는 중앙과 지방의 세원배분의 구조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세만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상당수 나타남
-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비율 증가하고 있음: 국고보조금의 지방비 부담이 2005년 33%에서 2012년 39%로 증가하고 있음, 이는 사회복지비의 지방비 부담이 가장 큰 원인이라 고려됨, 사회복지비 비중은 2005년 12%에서 2012년 20.5%로 급격하고 증가하고 있음
- 사회복지분야에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가용재원 잠식: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 부담으로 인하여 자치단체 자체 사업비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며,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채무가 최근 크게 증가되어 있음, 또한 최근의 취득세 등의 인하와 관련된 지방세 수입의 감소로 인해 지방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으며, 경기도와 같은 경우 자치단체장이 공공연하게 무상급식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음

2)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 우리나라와 외국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

- OECD 국가들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세수입 비중: 중앙정부대 지방정부의 국세와 지방세의 평균비율은 79대 21 수준임, 외국의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분석할 때 연방형, 지역형, 단일국가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주요 연방형 국가는 미국, 캐나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멕시코, 벨기에, 호주 등이며, 지역형 국가로는 스페인이며, 단일 국가형으로는 일본, 프랑스, 스웨덴, 아이슬란드, 대한민국, 핀란드 등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연방제 국가들 중 국세 비중이 높고, 낮은 주요 국가: 오스트리아(94:6), 멕시코(96:4), 벨기에(85:15), 호주(80:20) 등은 국세의 비중이 높은 나라에 속하며, 캐나다(45:55), 미국(48:52), 스위스(47:53)의 경우 국세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거나 대체로 50대 50의 균형을 이루고 있음
- 단일형 주요 국가의 국세와 지방세 비중: 스웨덴(52:48), 일본(53:47), 핀란드(66:34), 프랑스(70:30), 아이슬란드(70:30) 등은 상대적으로 국세의 비중이 낮은 국가로 나타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약 80대 20으로 조세환경이 비슷한 일본에 비해 지방세 비중이 26.9%p 낮음, 그리고 비교적 중앙집권 성향이 강한 프랑스보다도 10.4% 낮음
- 지역형 국가의 국세와 지방세 비중: 지역형 국가로는 OECD국가들 중 스페인으로 연방국가 수준에 이를 정도로 지방분권 강화 정책을 추진해온 국가임,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45대 55로 전체 OECD국가들 중 가장 높은 지방세 비중을 유지하고 있음, 재정분권이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음, 다음의 <그림2>와 <표1>은 OECD 국가들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그래프로 보여줌, <표1>은 전체 국가를 보여줌

<그림2> 주요 OECD국가들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2009년 기준)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11(<http://stats.oecd.org/Index.aspx>)

<표1> OECD국가의 국세와 지방세 비중(2009년도)

국가		총조세대비 비중(%)		지방세비중
		국세	지방세	
연방형	호주	80.2	19.8	5.1
	오스트리아	93.6	6.4	1.8
	벨기에	84.5	15.5	4.3
	캐나다	45.2	54.8	15.0
	독일	51.9	48.1	11.0
	멕시코	95.5	4.5	0.7
	스위스	47.2	52.8	11.9
	미국	47.8	52.2	9.1
지역형	스페인	44.8	55.2	10.2
단일형	칠레	91.8	8.2	1.4
	체코	97.9	2.1	0.4
	덴마크	73.7	26.3	12.3
	에스토니아	78.0	22.0	5.0
	핀란드	66.1	33.9	10.2
	프랑스	69.9	30.1	5.6
	그리스	98.9	1.1	0.2
	헝가리	90.0	10.0	2.7
	아이슬란드	70.0	30.0	9.3
	아일랜드	96.0	4.0	0.9
	이스라엘	90.3	9.7	2.5
	이탈리아	78.1	21.9	6.5
	일본	53.4	46.6	7.5
	한국	80.3	19.7	3.8
	룩셈부르크	93.5	6.5	1.7
	네덜란드	94.3	5.7	1.4
	뉴질랜드	92.7	7.3	2.3
	노르웨이	81.8	18.2	5.9
	폴란드	79.4	20.6	4.2
	포르투갈	92.0	8.0	1.7
	슬로바키아	94.9	5.1	0.8
	슬로베니아	83.3	16.7	3.7
	스웨덴	52.0	48.0	17.0
	터키	88.4	11.6	2.2
	영국	93.4	6.6	1.8
OECD평균		78.6	21.4	5.3
연방형국가평균		68.2	31.8	7.4
단일형국가평균		83.2	16.8	4.4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11(<http://stats.oecd.org/Index.aspx>)

○ OECD 주요 국가들의 GDP 대비 지방세의 비중

- 스웨덴(17%)이 가장 높으며, 그리스(0.2%)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 비중은 3.8%로서 전체 OECD 평균(5.3%)이하이며, 단일형 국가의 평균(4.4%)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임, 일본의 경우보다 2배 정도 낮은 것으로 조사됨, 다음의 <그림3>은 OECD 주요 국가들의 GDP 대비 지방세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3〉 OECD 주요 국가들의 GDP 대비 지방세의 비중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11(<http://stats.oecd.org/Index.aspx>)

○ OECD 주요 국가들의 지방세입 대비 지방세수 비중

- 우리나라의 경우 27%로 상당히 낮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음, 이는 OECD 평균은 약 40%보다 매우 낮은 비율임, 이는 중앙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호주, 벨기에, 그리스 등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경우 50%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음의 <표2>는 OECD 주요 국가들의 지방세입 대비 지방세수 비중을 보여주고 있음

〈표2〉 OECD 주요 국가들의 지방세입 대비 지방세수 비중

단일형 국가	비중(%)	단일형 국가	비중(%)	연방형 국가	비중(%)
아이슬란드	73.2	슬로베니아	39.2	독일	59.0
스웨덴	63.8	이탈리아	37.4	스위스	54.7
터키	59.3	덴마크	34.1	오스트리아	51.6
뉴질랜드	55.8	포르투갈	33.6	캐나다	51.1
슬로바키아	51.8	룩셈부르크	31.9	호주	30.2
칠레	51.0	폴란드	30.9	벨기에	20.3
핀란드	47.4	한국	27.0	스페인(지역형)	46.4
에스토니아	45.8	헝가리	22.8		
체코	45.1	영국	12.9		
프랑스	44.5	아일랜드	11.5		
이스라엘	43.1	네덜란드	8.3		
노르웨이	42.3	그리스	6.6		
OECD평균	39.8	단일국가평균	38.3	연방국가평균	44.5

자료: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2010

○ OECD 국가들의 지방세수입의 세원별 세수구조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세를 합한 전체 조세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세수입은 세원별로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이외 기타과세로 구분할 수 있음, 이와 같은 분류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회원국의 평균은 소득과세 46.5%, 소비과세 45.2%, 재산과세가 7.4%로 소득과 소비과세 중심적인 세원분포를 형성함, 대부분 소득 및 소비과세 중심의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지방세의 관점에서만 OECD국가들의 세원구조: 상당수의 회원국들이 소득과세형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재산과세형 국가들의 비중도 비교적 높음(아일랜드와 영국),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과세가 52.5%로 프랑스와 비슷함, 소비과세의 국가로는 헝가리(79.0%), 네덜란드(49.8%), 미국(41.4%) 등이 있음, 다음의 <표 3> 이를 보여줌

<표3> OECD 국가들의 지방세수입의 세원별 세수구조

국 가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기타
연방형	호주	25.4	48.2	26.4	0.0
	오스트리아	69.9	13.0	13.0	4.1
	벨기에	18.3	60.9	20.4	0.4
	캐나다	43.5	24.0	32.4	0.0
	독일	57.8	7.8	34.3	0.0
	멕시코	41.4	45.9	5.8	6.9
	스위스	80.7	14.0	5.3	0.0
	미국	24.3	34.4	41.4	0.0
지역형	스페인	37.8	19.8	41.0	1.4
단일형	칠레	0.0	42.1	57.9	0.0
	체코	0.0	43.1	56.9	0.0
	덴마크	88.9	11.0	0.2	0.0
	에스토니아	91.5	7.0	1.6	0.0
	핀란드	94.4	5.5	0.0	0.0
	프랑스	6.9	50.0	21.0	22.2
	그리스	0.0	63.8	36.2	0.0
	헝가리	0.2	20.8	79.0	0.0
	아이슬란드	77.7	19.8	2.5	0.0
	아일랜드	0.0	100.0	0.0	0.0
	이스라엘	0.0	95.2	4.8	0.0
	이탈리아	24.5	11.0	32.4	32.1
	일본	50.6	29.9	18.4	1.1
	한국	20.4	52.5	25.6	1.5
	룩셈부르크	91.7	6.4	1.4	0.4
	네덜란드	0.0	48.1	49.8	2.2
	뉴질랜드	0.0	89.1	10.9	0.0
	노르웨이	88.4	10.1	1.5	0.0
	폴란드	59.0	29.1	8.1	3.8

국 가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기타
단일형	포르투갈	38.7	37.8	22.7	0.9
	슬로바키아	0.0	50.6	49.4	0.0
	슬로베니아	77.7	15.8	6.6	0.0
	스웨덴	97.4	2.6	0.0	0.0
	터키	29.1	12.4	49.2	9.3
	영국	0.0	100.0	0.0	0.0
OECD평균		39.3	35.9	22.2	2.5
연방형국가평균		45.2	31.0	22.4	1.4
단일형국가평균		37.5	38.1	21.4	2.9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11(<http://stats.oecd.org/Index.aspx>)

3) 우리나라의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현황

○ 지방소비세 현황

- 지방소비과세의 현황: 현재 지방세 중 소비과세는 지방소비세, 레저세, 담배소비세가 있음, 레저세는 경마장 또는 경륜장 등의 이용에 따라 과세하는 세목으로 과세표준이 발매금 총액으로 되어있음, 담배소비세는 소비자가 지역 간 이동하면서 구매하는 소비과세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대기오염, 화재위험 등을 유발할 가능성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하여 과세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음, 2010년부터 도입된 지방소비세는 현재 부가가치세액의 5%이며, 2013년부터 10%로 인상될 예정임

○ 지방소득과세의 현황: 현 우리나라 지방소득세는 소득분과 종업원분으로 구분되어 있음, 또다시 소득분은 소득세분과 법인세분으로 구분됨

- 지방소득세 중 소득분 현황: 소득세분과 법인세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하였음, 소득세분은 소득세액의 10%를 부가세액으로 하고 있으며, 과세대상은 근로소득, 퇴직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이 포함됨, 법인세분은 법인세액의 10%를 부가세액으로 하고 있음, 법인세분의 과세표준은 지방자치단체 내 법인의 종업원 수 비율, 법인의 건축물 연면적 비율에 기초함
- 지방소득세 중 종업원 분 현황: 종업원분은 종업원 수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소에 대하여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과세함, 그러나 50인 이하사업장은 과세하지 않음,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50인 이하의 사업장은 그 이상의 종업원을 증원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고용의 창출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음

4) 지방소비세 세율의 확대 및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공동세원화

○ 2010년도에 도입된 지방소비세에 대한 평가

- 지방소비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재정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수도권 100%, 비수도권(광역시) 200%, 비수도권(도) 300%의 가중치를 두고 있음, 이 지방소비세의 도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의 감소폭이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평가됨(1995년도 63.5%에서 2011년 평균 49.7%로 감소), 이 지방소비세는 지방교부세보다 재정의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으며, 지역의 소비와 연계되어 있고,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더 우월한 세금으로 평가될 수 있음,
- 지방소비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재정적 격차를 완화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됨, 다음의 <표4>는 지방소비세 도입 전과 후의 세수를 비교한 것임

<표4> 지방소비세 도입 전과 후의 세수를 비교

구분	2009	2010			
		도입		미도입	
		세수(비중%)	신장률	세수(비중%)	신장률
전국	45.17(100)	49.16(100)	8.8	46.48(100)	2.9
수도권	26.19(58)	27.38(56)	4.6	26.50(57)	1.2
비수도권	시	7.35(16)	13.6	7.73(17)	5.2
	도	11.63(26)	15.5	12.25(26)	5.3

자료: 이영희 등. 2012. 국세와 지방세 바람직한 세원조정 설계. 지방세발전포럼

- <표4>에 대한 설명: 지방소비세 도입 후 지방세수 총액은 8.8% 증가함, 수도권의 경우 4.6%, 비수도권의 광역시는 13.6%, 도는 1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상당한 증가라 평가할 수 있음, 지방소비세의 가중치로 인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지방세수의 불균형이 상당한 정도 완화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지방소비세율의 확대에 따른 운영방안

- 2013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은 부가가치세의 5%에서 10%로 세율이 확대됨, 10%로 확대되었을 경우 현재와 같이 운영하는 방안과 추가 5%인상분에 대하여 광역과 기초가 세원을 공동 이용하는 방안이 있음
- 광역과 기초가 지방소비세 추가 5%의 세원을 공동 이용하는 방안: 지방소비세는 원래 지방재정분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임, 따라서 광역과 기초간 세원배분의 경우에도 중앙과 지방간 세원할당과 동일한 논리로 자주재원 확충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지출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이 기초자치

단체에까지 지방소비세가 확대되면 지방교부세의 자연감소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임

5) 지방소득세 개편 방안

○ 현재의 소득세의 부가세에서 2013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

- 지방소득세의 개편시 고려하여야 할 것은 과세표준과 세율임, 현재의 과세표준은 모든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소득액임, 이를 순수한 소득액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지방소득세율의 확대: 현행 소득세 중에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비율은 국세의 1/10임, 이를 약 2배 정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6) 신세원 발굴

○ 신세원 발굴 노력

-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신세원의 발굴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다음의 <표5>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세원 발굴 사례임

<표5> 지방자치단체의 신세원 발굴 사례

지방자치단체	신세목 및 신세원 개발방안
서울특별시	광고세 신설, 상속·증여세에 대한 주민세 소득할 신설
인천광역시	벌크화물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
경기도	상속·증여세에 대한 주민세 소득할, 인도세(인도사용세), 온천재산세
강원도	관광세 신설, 지역개발세(수자원·지하자원) 세율 인상 및 과세대상 확대, 환경보전세 및 광고세 신설,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
충청북도	관광세 신설
전라남도	광고세, 환경보호세, 관광세, 문화관광시설세, 사리채취세, 별장 등 소유세 신설,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경상북도	광고세, 상속·증여세에 대한 주민세 소득할 신설,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경상남도	관광세, 온천세 신설
제주시	인도세, 관광세 신설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
경상북도 청도군	소싸움에 대한 레저세 부과

자료: 박채기(2005),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제개편방안, 「2005지방재정세미나」, 지방재정공제회

○ 카지노세

- 미국의 경우 여러 주에서 카지노세를 도입하고 있음,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네바다 주의 라스베가스는 카지노세 뿐만 아니라 운영 중인 카지노의 수, 종업원, 매출액, 카지노세 등이 지역경제를 크게 활성화 시키고 있으며, 주의 재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 외에 뉴저지, 미시시피, 인디애나, 일리노이 주도 카지노세를 도입하여 주의 재정을 상당부분 충당하고 있음
- 카지노세의 사용목적: 카지노세의 사용목적은 법에 의해 정해져 있는데, 고등학교 이하 의무교육 지원, 지역경제 개발, 지방정부 지원 등으로 제한되어 있음, 그 외에 유적 보전, 도박중독자 치료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됨
- 중국 마카오의 카지노: 1999년 말 스탠리호의 STDM사가 마카오의 독점 특허권을 갖고 9개 카지노, 경마장, 경견장, 복권을 운영하는 대신 카지노 운영수익의 30%를 프랜차이즈 세금으로 정부에 납부하고 있음, 마카오는 이 카지노세를 제조업 육성, 무역 분야 육성, 마카오의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있음
- 다음의 <표6>은 미국의 상업용 카지노의 재정수입 현황임

<표6> 미국의 상업용 카지노의 재정수입 현황

州(State)	세금 및 수수료(Casino Taxes & Fees)
Colorado	•카지노세: 총 수입액에 따라 최저 0.25%에서 20.0%까지 누진 •슬롯 머시인과 테이블 게임장치 수수료를 市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수 - Blackhawk City: 대당 \$750.00, Cripple Creek City: 대당 \$1,200.00 Central City: 대당 1,160.00.
Illinois	•입장세: 전년도 이용객 기준 인당 최저 \$2.00에서 최고 \$4.00까지 차등적용 •도박세: 총 수입액에 따라 최저 15%에서 최고 70%까지 누진
Indiana	•입장료: 일인당 \$3.00 •면허수수료: 면허시: \$25,000.00. 이후 매년 면허갱신시 \$5,000.00. •도박세: 총 수입액에 따라 최고 20%까지 누진
Iowa	•입장료: 일인당 \$0.50. •지방정부 추가수수료(local option fee): \$0.50. •입장객 일인당 연간 면허수수료: \$ 5.00 •도박세: 총 수입액에 따라 최저 5%에서 최고 20%까지 누진.
Lousiana	▷ 선상카지노(Riverboat Casino) •면허수수료: 면허시-카지노 선 일대당 %50,000.00. 매년 면허갱신시 기본 \$100,000.00에 카지노선 총 수익의 3.5% 추가 •카지노 선 운영세(franchise tax): 연간 수익의 15%. •지방정부 추가수수료: 이용객 일인당 \$2.50. ▷ 일반카지노 •도박세: 총 수입액에 따라 최고 18.5%까지 누진

州(State)	세금 및 수수료(Casino Taxes & Fees)
Michigan	•카지노 도박세: 총 수입액에 따라 최고 18.0%까지 누진(세금의 55.0%는 카지노장이 설치되어 있는 Detroit 시, 45.0%는 주정부로 배분됨) •자치단체 사용료(municipal service fee): 연간 최저 4백만불 혹은 수입액의 1.25%가 4백만불을 초과할 경우는 큰 금액을 납부. •年 평가금(annual assessment): 일차연도는 \$25백만불, 이후는 소비자 물가변동율에 따라 변동 적용
Mississippi	•도박면허세(州稅): 총 수입액에 따라 최고 8.0%까지 누진. •기초자치단체 면허세: 총수입액의 0.4%에서 최고 0.9%까지 누진. •기초자치단체 부가세: 총 수입액의 3.2% •테이블 게임세: 테이블 10개까지는 \$50.00에서 \$3,000.00까지 차등적용, 테이블 16개 이상 경우, 테이블 16개까지는 대당 \$500.00, 테이블 17개에서 26개까지는 초과 테이블 대당 \$4,800.00, 27개에서 35개까지는 초과 테이블 대 당 \$2,800.00, 테이블이 35개 이상 초과시 초과 테이블 대 당 \$100.00
Missouri	•도박세: 총 수입액의 20%까지 누진. •연간 면허수수료: 이용객 일인당 \$5.00 •입장료: 일인당 \$1.00. 지방정부 추가수수료: 이용객 일인당 \$0.50
Nevada	•슬롯 머시인세: 연간 대당 기본 \$250.00에 월별 배분액. •카지노 오락세: 카지노 입장료, 음식, 음료, 기념품과 같은 물품 판매의 10%. •면허수수료 - 월별 수수료(州稅): 총 수입액의 6.25%. - 연간 수수료는 \$100.00에서 \$6,000.00까지. - 기초자치단체(County) 월별 수수료는 \$10.00에서 \$50.00까지. - 기타: 비제한적 게임허가와 제한적 게임허가에 따라 슬롯 머시인에 대한 면허 수수료 다양
New Jersey	•면허수수료: 면허시 최저 \$200,000.00. 매 2년마다 갱신시 최저 \$1000,000.00. •게이밍 소득세: 총 수입액의 8%까지 누진. •지역 재투자세(local reinvestment tax): 총 수입액의 1.25% •슬롯 머시인세: 대당 연간 \$500.00. •카지노 법인세(州稅): 수입액의 9%
South Dakota	•게이밍세: 총 수입액의 8%까지 누진 •테이블, 슬롯 머시인 당 연간 \$2,000.00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카지노산업에 대한 레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따라서 일종의 변형된 카지노세가 레저세라는 명목으로 부과될 예정임

○ 레저세의 확대

- 레저세의 내용: 현재 우리나라에 레저세는 경륜·경정·경마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로 마권이나 경주권을 판매하는 한국마사회 또는 경주(경륜·경정)사업자가 마권 등의 발매금액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조세를 말함

- 레저세의 과세대상: ①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륜 및 경정 ②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경마 ③ 그밖에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임
- 레저세 세율 및 신고 납부: 위의 과세대상을 사업으로 하는 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10%의 세율을 적용함, 레저세는 경마장이나 경륜장 등이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가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 납부함
- 스포츠평토토에 대한 레저세 확대: 스포츠 토토는 배당금 발매, 당첨, 환급방법 등이 경마, 경륜등과 흡사하고, 스포츠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함, 그리고 스포츠평토토가 경기정보, 분석 등이 당첨에 크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일반 복권과는 차이가 있으며 오히려 경마, 경륜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교통 체증, 쓰레기 등을 유발하므로 지방행정재정수요 유발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마땅함, 또한 지역주민들이 대부분 발매수익금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그중 일부를 지역주민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과세가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임
- 카지노 산업에 대한 레저세 과세: 이는 이미 2014년도부터 시행하기로 법안이 통과된 상태임

○ 관광세 도입

- 관광세의 대상 및 내용: 지역이 보유한 관광 관련 자원을 대상으로 하여, 일본의 임의세와 같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자체가 선별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관광세 징수 방식: 지방세법에 가능한 대상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관광세를 신설함, 여러 가지 대상을 열거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히고, 과세자주권 확보와 신세원 발굴을 용이하다고 할 수 있음
- 관광세 납세자 및 구체적 과세 대상: 관광객이 관광자원 또는 관련 시설 및 사업체를 이용하거나 입장함으로써 지불하는 일체의 금액, 다시 말하자면 관광자원의 입장 및 이용행위, 운동경기장, 골프장, 스키장, 관광유람선 등 관광 관련 시설의 이용행위, 호텔, 콘도, 여관 등 관광숙박시설과 영화관, 테마공원 등의 부대시설 이용행위, 기타 관광음식점 및 관광기념품 등이 될 수 있음

○ 지역자원시설세 확대: 현재의 지역자원시설세는 종전의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를 통합하여 이루어진 지방세임

- 현재의 과세대상: 현재 과세대상은 발전용수, 음용수로 제조, 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특정부동산 등임

- 과세대상 확대: 현재는 댐의 발전용수에 과세되고 있으나, 이를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댐 건설로 인한 가뭄 및 홍수방지, 용수 공급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넘어서까지 미침, 그리고 댐의 건설로 인한 부동산의 수몰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소 등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과세의 대상을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음
- 현행 세율의 인상: 지금까지 지하수 중 음용수에 대한 세율은 오랫동안 인상되지 않음,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발전용수의 경우 세율이 너무 낮으므로 인상할 필요가 있음

7) 유망성장산업의 지역특성화

- 유망성장산업의 지역특성화 추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종으로 지역여건에 적합한 유망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지역특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유망 지식기반산업과 해당 협력업체의 지역 특성화: 유망한 지식기반산업의 지역특성화를 추진하고 해당 협력업체의 지식 특성화 추진 및 지역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고기술과 접목된 전통산업의 지역 특성화 전략: 지역 내에서 부존자원을 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높은 특산물을 오랫동안 생산하고 판매한 전통 중소기업의 특성화 추진

8) 지방교부세의 교부세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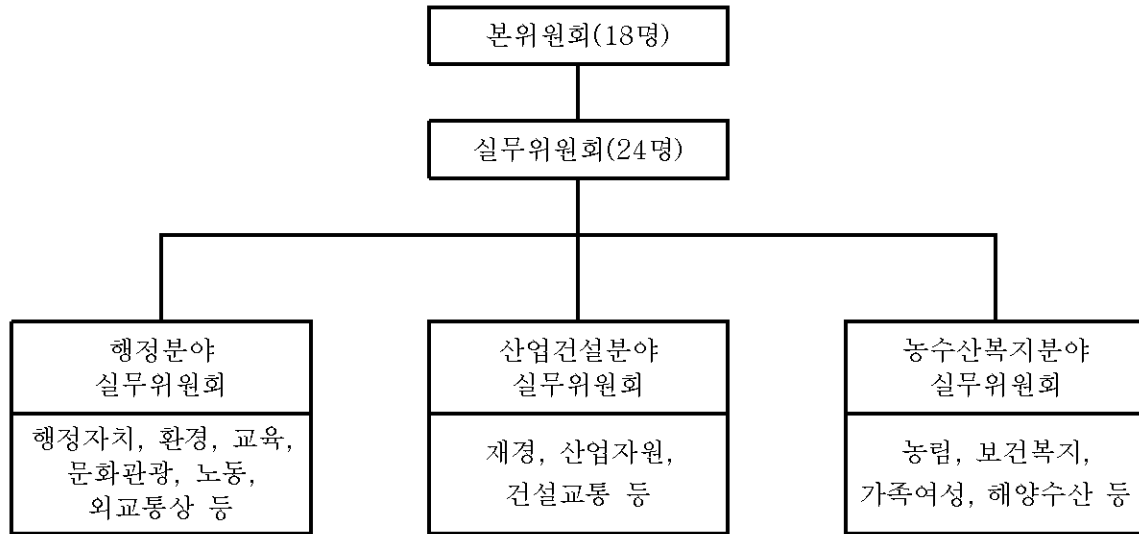
- 현행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유지하고 있음: 1% 정도 상향 조정, 지방교부세는 공식에 의해 배분되기 때문에 재정분권을 강화할 것임

2. 지방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1) 재정분권 관련 중앙의 지방분권 체제

- 지방재정분권을 추진하기 시작한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국민의 정부로부터 시작되었음
- 국민의 정부의 중앙의 지방분권 체제
 - 1999년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추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방이양추진위원회’발족 다음의 <그림4>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체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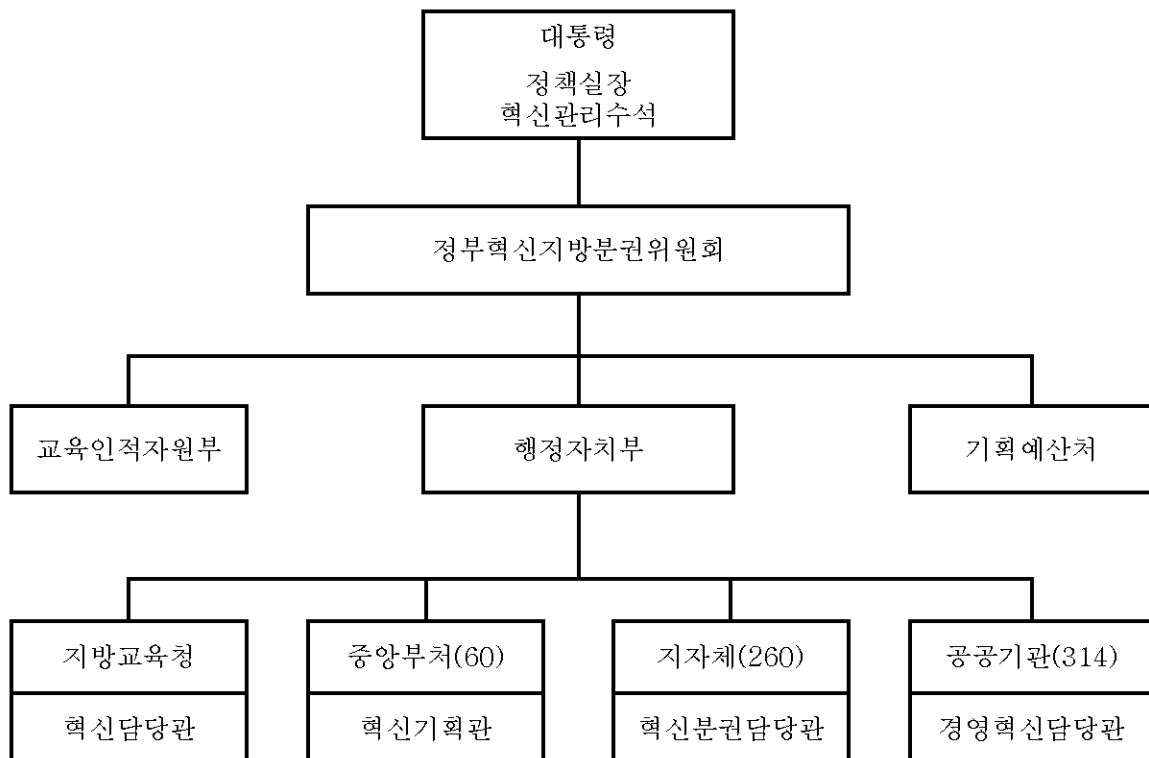
<그림 4>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체제



○ 참여정부의 중앙의 지방분권 체제

- 국민의 정부에서 설치된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그대로 존속되었고, 여기에 2003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여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함
- 다음의 <그림5>는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추진체계를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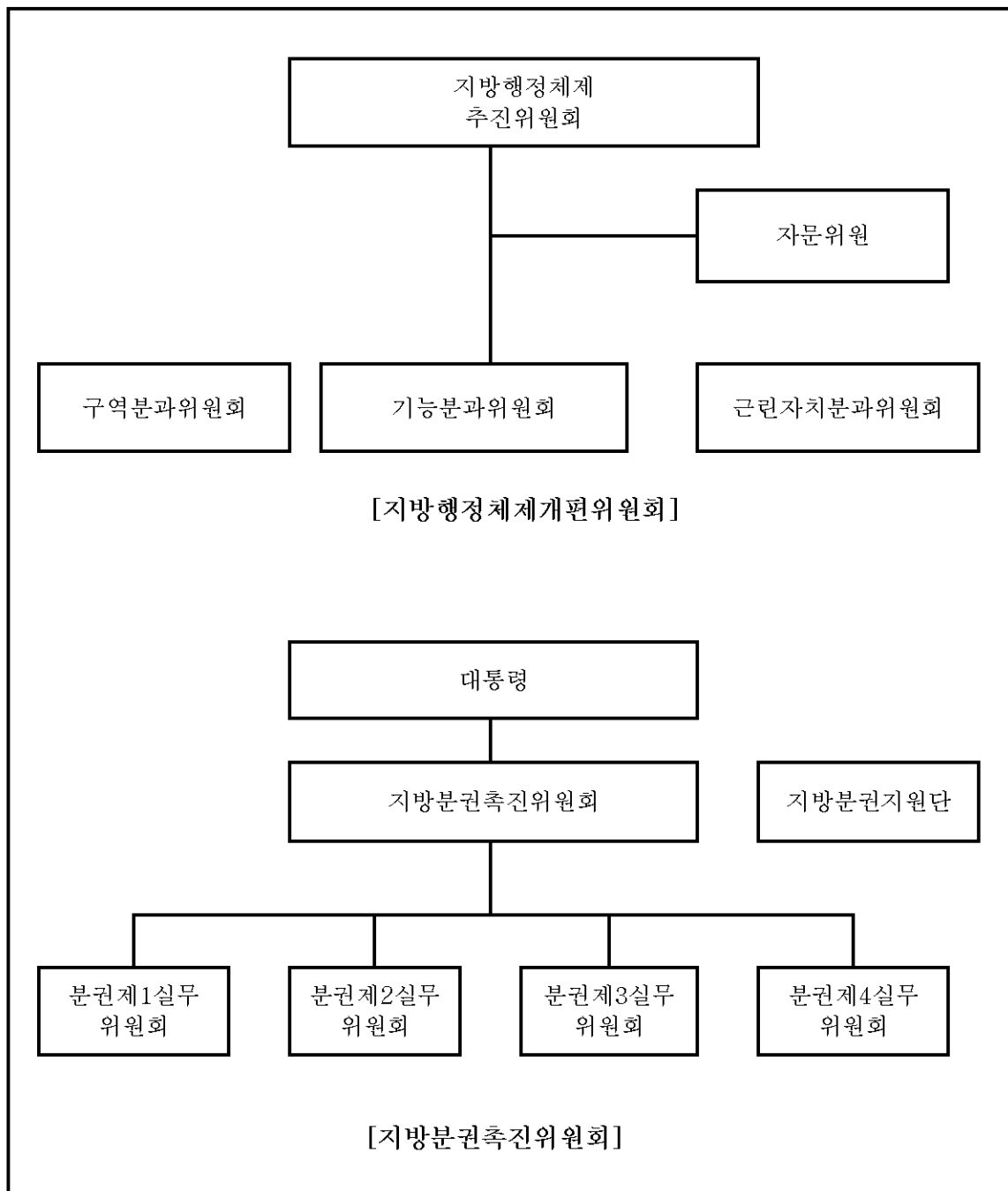
<그림 5>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추진체계도



○ MB정부의 중앙의 지방분권 체제

- MB정부에서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분권정책을 실시함
- 다음의 <그림6>은 MB 정부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보여주고 있음

<그림6> MB 정부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2) 역대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현황

○ 국민의 정부 지방분권

- 지방분권에 대한 국정철학: 국정개혁 100대 과제로 “지방이양”을 선정하였고, 국가·지방사무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음,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기반 마련한 시기라 평가할 수 있음, 지방분권에 대한 기초를 놓았다고 할 수 있음
- ‘지방이양추진위원회위원회’는 1, 2차에 걸쳐 ‘지방이양추진 기본계획’ 수립하고, 지방이양 대상 사무를 발굴하였음, 총 41,603개 사무 중에서 국가사무 30,240개 (73%), 지방사무 11,363개(27%)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고,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2,229개, 연구용역 전문가 2,505개, 자체적으로 1,861개를 발굴하였고, ‘시·군·구청장협의회’ 941개를 각각 발굴하여 심의하였음, 이 중에서 612개를 이양하기로 결정하고 실제적으로 이양을 추진하였음

○ 참여정부 지방분권

- 분권철학: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국정핵심과제로 설정하고, 국정운영의 기본 방침으로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과 타협’, ‘분권과 자율’을 들고 있음, 지방분권을 기초로 지역사회, 지방정부, 그리고 중앙정부를 혁신하여 국가를 ‘분권형 선진국가’를 이룩하는 정책기조를 취함
-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대통령 직속기구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하여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여 총 949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였음

○ MB정부의 지방분권

- 분권철학: 2008년 10월 7일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광역경제권 구축,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포함하였음,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킴으로써 지방분권의 추진의지를 표명함
- “지방분권추진위원회”는 출범이후, 2008년 54건, 2009년 697건, 2010년 481건, 2011년 현재 33건으로 합계 1,265건을 이양·확정하였으나 그 중에서 단지 34건만 실제로 이양하였음,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거의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3) 지방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관리

- 우리나라의 지방채 발행 실태와 문제점: 전국적으로 소극적 지방채 활용, 소수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발행 관점현상 발생, 과도한 공공자금 의존결과 시장

원리와 경쟁체제 작동 결여, 지방채무 범위 설정문제, 지방채 발행 적정규모에 대한 개관적 평가기준 미흡, 지방채 총액한도제도 운영과 관련된 문제, 재정책임의 문제, 각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관리체계 구축 미흡, 지방공기업 채무관리 문제 등과 같은 문제가 존재함

- 가능한 지방채 문제의 해결 방안: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도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폐지할 필요성이 있음, 지방채무의 범위 재설정, 지방채 발행 과점현상을 개선, 지방공기업 부채관리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접근, 자본예산제도의 도입, 지방채 발행 시 주민투표 실시, 지방채 관리를 위한 자기재정규율 수립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 지출의 구조개선

-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 관련 사무 및 자원배분체계 재편: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재정은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선
-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시행이 지방재정영향을 분석하고, 적정한 지방비 부담률을 계산하여 지방에 대한 부담을 적게 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중복지출, 관행적 지출, 무리한 지출 억제

○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견제시스템 확충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의한 견제시스템이 필요: 방안은 외부감사제도 도입, 재정출납관 제도 신설 등
- 지방의회에 의한 견제시스템 강화: 지방의회 정책연구실 강화, 행정사무 감사 조사권의 강화
- 주민에 의한 견제시스템 강화: 주민참여예산제도 강화, 주민투표제 이용

○ 지방재정준칙 도입 방안 모색

-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재정수지, 부채, 지출, 수입 측면에서 재정규율을 확립하기 위해 지방재정준칙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취득세 등의 세수가 감소함으로써 지방의 재정수입이 위축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지방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준칙을 도입하여야 할 것임
- 지방재정준칙 도입 방안: 지방재정준칙 제정 및 집행주체는 안전행정부, 광역

지방자치단체, 개별단체로 하고, 재정규모, 수지, 채무 등 어떤 변수들을 통제 관리할 지를 명확히 확정함, 지방재정준칙 위반 시 제재수준은 금전, 사법, 신용적 제재 등을 사용할 수 있음, 현행 지방재정관리제도와의 관계설정 등이 필요할 것임

○ 지방재정분석제도 개편

- 현행 지방재정분석제도의 문제점: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분리운영으로 인해 현금주의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재정건전성의 측정에서도 분석 방향, 범위에서 재정의 구조적 요인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 거시적 관점 반영하지 못함
- 지방재정분석제도의 개편: 예산통제의 관점에서 종합재정진단 및 컨설팅 기능 강화, 재정위험 판단지표, 재정의 구조적 요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미래 재정 관리 능력 등을 포함하는 재정분석지표체계의 확대 조정,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관계정립

○ 포괄보조금제도의 개편

- 현행 포괄보조금제도의 문제점: 편 포괄보조금제도는 법정 공식주의에 입각한 예산배분, 지방비 부담의 폐지, 자치단체 자율성 보장, 기준보조율의 적용으로 지방비 부담이 과도함
- 포괄보조금제도의 개편 방향: 세출 한도액은 법정 공식주의에 입각하여 투명하게 운용, 주로 편익이 국지적이고, 지방사무의 성격이 강하며, 성과측정이 용이한 사업 등을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통합보조율을 50% 이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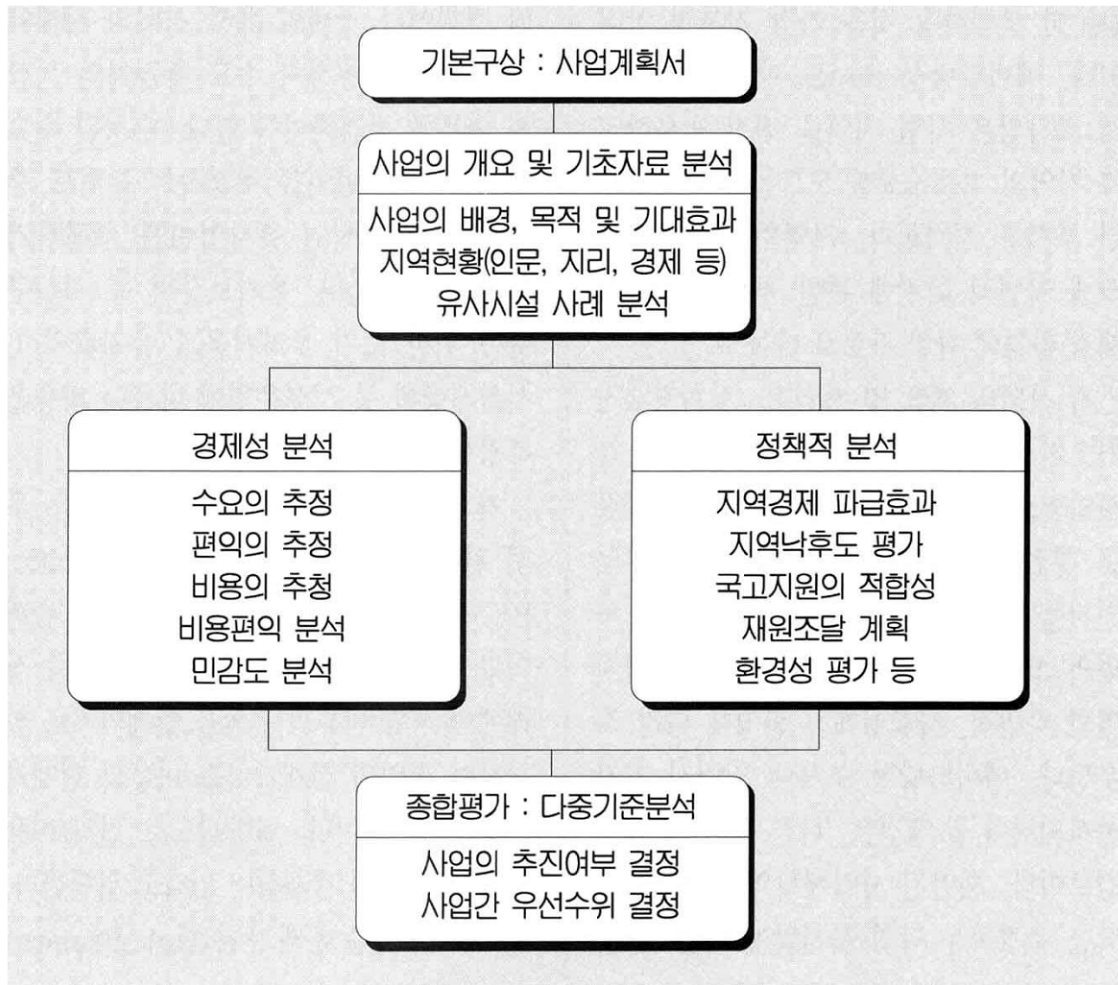
4) 예비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의 의의

-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1999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 즉 500억 이상의 규모에 300억 이상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개괄적인 조사를 통하여 경제성분석, 정책적 분석, 투자우선순위, 적정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중앙정부가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해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지방분권의 흐름에는 역행하는 제도라 할 수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체계: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있음,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인 경우 사업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기관에 의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짐, 다음의 <그림7>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체계를 보여주고 있음

<그림 7>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체계



○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분권

- 예비타당성조사에 있어서의 지역균형발전 고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적 요인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국가균형발전임, 낙후지역에 대하여서 지역낙후도지표를 활용하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체에 대한 문제: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있음, 따라서 중앙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주체가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종속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임

3. 사회복지비 분담제도 재정비 등과 관한 과제 발굴 및 실천전략 모색

1)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 현황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은 지방이양사업, 국고보조사업, 자체사업의 3가지 형태가 있음, 지방이양사업은 분권교부세를 통하여 재원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음, 국고보조사업은 2010년 기준으로 104개 정도로 지방비의 부담을 요구하는 사업이 대부분임, 그 외에 시·도비보조사업이 있음, 자체사업은 순수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업이 있음

○ 지방이양사업의 종류

- 다음의 <표7>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양사업의 종류임

<표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양사업 종류

유형	지방이양사업
생활시설 운영시설	·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 노인시설 · 장애인: 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 아동시설, 모자복지시설
이용 시설	·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의료재활시설, 체육관,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및 재활지원센터, 청각장애수화통역센터, 정신지체인자립지원센터, 해피콜봉사센터, 정보화지원센터, 지체장애인편의시설센터 · 노인:재가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치매상담센터, 지역사회시니어클럽 · 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시설설치 및 기능보강	<기능보강>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관, 사회복지관 · 재가노인복지시설개보수 <시설설치> · 노인복지회관 신축 · 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
서비스 (급여)	· 장애인특별운송사업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차량 ·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 청각장애아동달팽이관수술 · 장애인생활시설치과유니트 · 경로식당무료급식 ·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 노인건강진단 · 노인일거리마련사업 · 모자복지시설퇴소자자립정착금 · 푸드뱅크운영장비지원 · 노숙자보호, 쪽방생활자지원 · 결연기관PC구입비
기타 프로그램 · 사업	· 편의시설설치시민축진단 · 경로당활성화 · 소년소녀가장지원 · 가정위탁양육지원, 퇴소아동자립정착금 · 결식아동급식
인건비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익근무요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 국고보조사업의 종류 및 지방비부담률

- 국고보조사업은 보건복지부 66개 사업, 여성가족부 29개 사업, 기획재정부 5개 사업, 행정안전부 1개 사업, 노동부 3개 사업의 총 104개 사업
- 국고보조사업의 종류별 지방비부담률: 다음의 <표8>은 국고보조사업 지방비부담률을 보여주고 있음

<표8> 국고보조사업 지방비부담률

40%이하 (12개)	(30%)장애인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30-80%)장애인일자리지원, (40%)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IL) 지원, (40-60%)보육돌봄서비스, 영유아보육료지원, 보육시설지원, 보육시설종사자보수교육,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40-90%)기초노령연금
50% (49개)	(50%)노인단체지원, 장애인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부랑인시설기능보강, 노인요양시설 확충, 장애인등록진단비지원, 아동시설 기능보강,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 보육시설기능보강, 지방보육정보센터운영, 노인치매병원확충,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사업지원, 재활병원 건립,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임산부아동건강관리, 난임부부지원지자체 경상보조, 찾아가는 산부인과, 노인건강관리,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저출산고령사회극복, 국민인식 개선, 노인일자리사업지원(제주),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지원, 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 및 운영, 한부모가족복지시설기능보강, 청소년시설확충, 청소년유해환경개선, 청소년국제교류,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아동청소년 활동지원,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지원,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아동청소년참여지원, 청소년쉼터운영지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운영, 가족역량강화지원, 글로벌 다문화센터 건립, (50-60%)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활동지원, (50-70%)방과후돌봄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50-80%)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여성일자리센터 건립지원, (50-100%)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스템 구축,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여성폭력피해자 구제활동지원
70% (27개)	(70%)장사시설 설치사업, 부랑인 복지지원, 장애수당,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 가정위탁아동상해보장, 입양수수료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장애인사회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보조,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농어촌지역 소규모보육서비스 제공,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입양·가정위탁 심리치료지원사업, 중증장애인연금, 아이돌봄지원사업, 취약계층청소년자립지원, (70-90%)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자활사업, 자활소득공제,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적극적 탈수급 지원, 희망근로프로젝트
80% (15개)	(80%)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 장애인보조기구지원, 장애인 의료비지원, 장애인 자녀학비지원, 긴급복지지원, 여성장애인지원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차상위양육,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 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다문화가족언어및교육서비스, 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 사회적기업육성
100% (8개)	(100%)영주귀국 사할린한인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지역복지사업평가 자치단체경상보조,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지원운영, 지역복지사업평가, 집결지 성매매자활지원사업, 여성특화IT 온라인 교육,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기초수급자양육

○ 자체사업의 종류

- 지방자치단체 자체사회복지사업은 다음의 <표9>와 같음

<표9> 지방자치단체 자체사회복지사업

구분	자체사업 종류
지역 복지	참여형 사회복지시책추진, 사회복지시설평가, 단위사업추진경비, 복지콜센터설치운영, 민간사회복지지원, 사회복지관기능보강, 노숙인쉼터운영, 사회복지관운영지원,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 보훈시설확충, 보훈단체지원
빈곤	저소득층 자녀교육지원, 단위사업기본경비, 자활사업지원
장애인 복지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지원, 단위사업추진기본경비, 장애인지역재활시설 운영지원, 장애인재활 및 사회참여사업, 장애인편의증진사업
여성 복지	여성취업인력 육성사업, 양성평등사업지원, 단위사업추진기본경비,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 여성사회참여확대사업, 취약여성특별지원, 은심미동심 순회서비스,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양립지원, 한부모복지시설 지원, 취약계층 인권보호
보육	보육시설 취사도우미 파견, 보육정책 운영관리, 단위업무 추진 기본경비, 보육시설 한마음대회, 다문화매직사업
청소년 복지	청소년육성사업지원, 전라북도 자매결연도시 청소년단체 국제교류, 단위사업추진 기본경비, 청소년비정규학교 운영지원, 청소년보호활동지원
아동 복지	실종아동보호,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 입양 활성화 지원, 단위사업추진경비, 아동행사지원, 아동권의 증진사업, 아동급식지원
노인 복지	노인의 날 행사, 노인회활성화 사업지원, 노인회 사회적 일자리사업, 노인사회 참여확대 지원, 경로당 여가활성화 지원, 단위사업추진경비,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평가,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노인건강진단, 무료급식지원, 노인보호전문기관지원, 경로당 지원, 노인복지관 지원, 단위사업추진 기본경비,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요양보호사 자격관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처우개선, 노인복지시설 행사지원
저출산 대응	저출산대응기반조성, 저출산 대응 도민홍보

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지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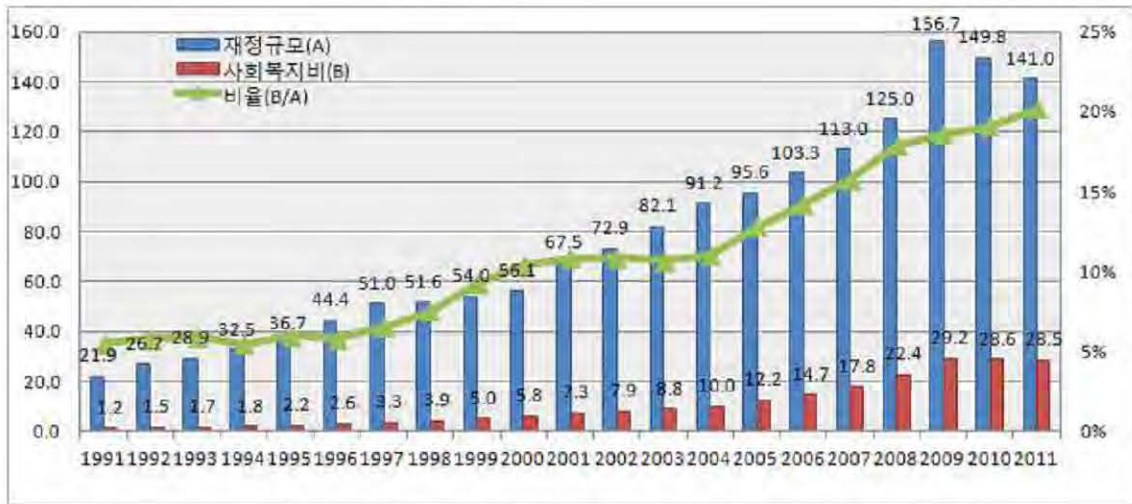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지출

- 1991년 이후 2010년까지 지방재정규모는 6.8배 증가함,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의 규모는 23.8배 증가함, 지방의 사회복지지출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20% 이상씩 증가함,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비 비중은 1991년 5.5%에서 2011년에 20.2%로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 사업의 지방이양이 시행된 2005년 이후 사회복지비 점유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연도별 사회복지지출의 증가 추세: <그림8>은 연도별 사회복지지출의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그림8〉 연도별 사회복지지출의 증가 추세

(단위:조원,%)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2001~2010 및 「2011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3) 사회복지비 지방비 부담제도의 개선

- 국가보조금제도의 개선: 지방자치단체별 차등보조율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이 요망됨, 개선의 방향은 지방자치단체별 GRDP, 지니계수, 재정력지수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차등보조율을 계산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재정보전: 2005년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 이루어짐, 이를 분권교부세로 보전해 줌, 그러나 분권교부세로는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의 증가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 분권교부세의 확충이 필요함

4) 사회복지비 분담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

- 국고보조사업의 제도개선: 지방자치단체별 GRDP, 지니계수, 재정력지수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차등보조율을 계산하는 방법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포괄보조금제도의 확대 도입: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되어 사용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포괄보조금의 성격을 띠고 있음,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국가보조금의 기준보조율 인상: 기준보조율과 관련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문 헌】

- 곽채기.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재원 분담방안-사회복지 분권교부제도의 개편방안을 중심으로”, 2010년 보건·복지재정의 현안과제와 정책방향에 관한 토론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4.1
- 고경환.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 Issue&Focus, 제75호 (201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고영선. 200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화 방안”,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지역개발정책의방향과 전략」, 한국개발연구원
- 김상철·김대철. 2010. “참여정부 이후 지방복지재정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시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이양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7(2).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123-150.
- 김정완. 2002. 관광세도입의요건과재정효과: 경기도를중심으로, 지방세. 통권73호.
- 김한기. 2003. 지방의 신세원 개발방안, 「지방세」, 2003년 제2호(통권 76호), 지방재정공제회
- 박기목. 2002. 국고보조금의 지방비부담방식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제11권 제3호
- 서정섭. 2004.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건전성 분석. 「지방행정연구」. 18(4): 37-256.
- 손희준 외. 2011.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방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송미령·권인혜(2011), 「포괄보조금제도 운영의 실태와 개선방향」, 정책연구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병량. 2005. 노무현정부의 재정분권에 대한 평가: 성과와 한계. 「한국행정연구」. 14(4): 215-242.
- 정광호. 2006. 아시아문화전당 정책사례: 예비타당성 논쟁과 정책분석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5(2): 213-245.
- 정재진. 2011. 재정분권이 지방재정건전성에 미친 영향. 「정부학연구」. 17(2). 289-325.